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11. 20 선고 2024가단539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1. 20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9,958,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6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백주연

별지